

제8조(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) ①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(2,000억원)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·결정한다.

보조금의 배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각 시·군별 보조금액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총 주행세중에서 배분하게 된다.

<영 제146조의15>

- ① 법제196조의18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·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(이하 이 절에서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으로 하되, 자동차에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,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,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·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.
1.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·군별 보조금액
 2.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× 당해 시·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/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

4. 7~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

1) 배 경

'99.12.28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(법률 제6060호) 부칙 제5조에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적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